



경기도 프리랜서 대상 공정거래교육

저작권법

CONTENTS



01

저작권이란?

02

저작권의 종류 및 보호기간

03

법률적 구제방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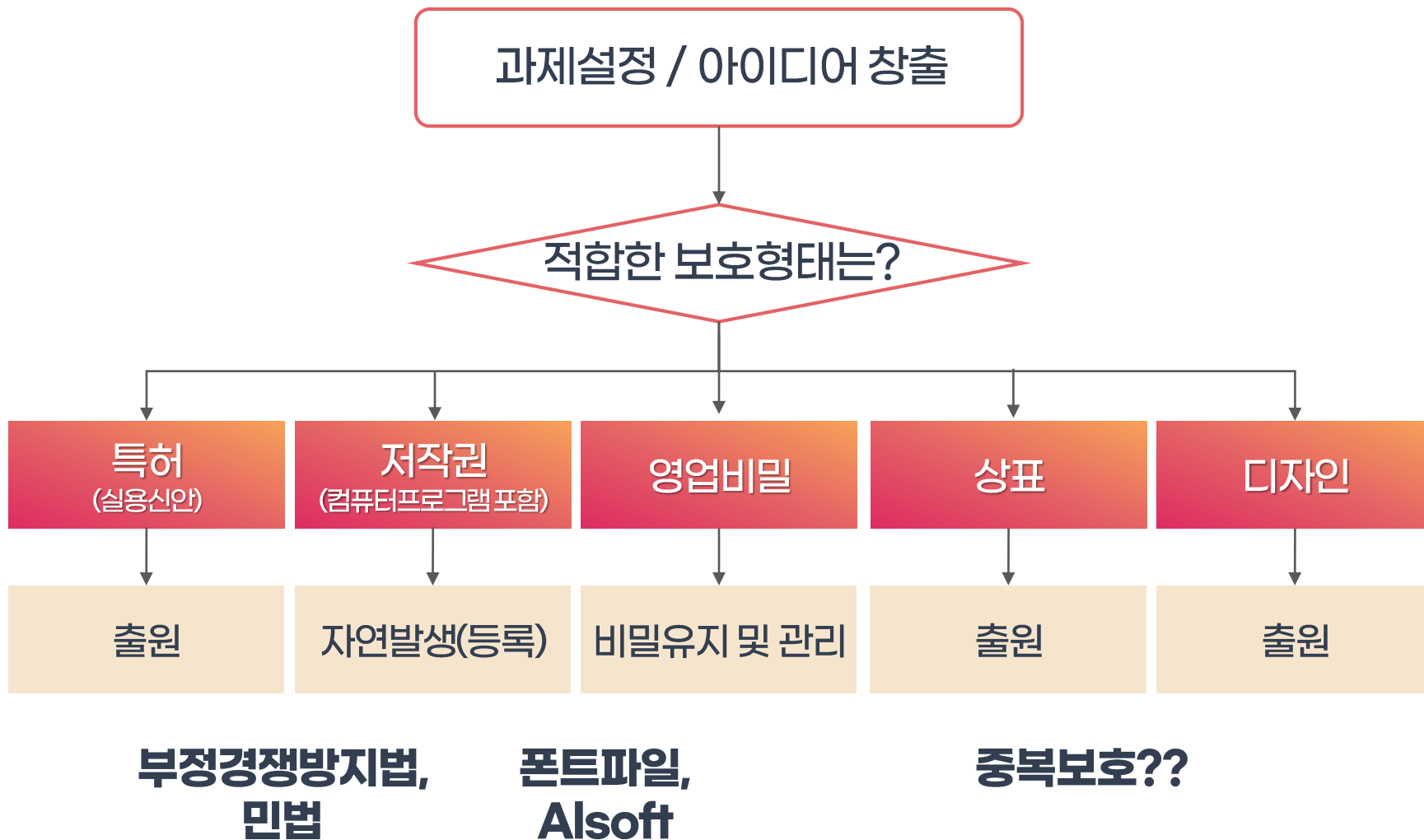
저작권이란?

The background image shows two women in a workshop or classroom setting. The woman on the left is holding a clear glass perfume bottle, and the woman on the right is holding a small vial. They appear to be engaged in a discussion or activity.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with '창작물이' in white, '법적 보호를' in yellow, and '받는 방법은?' in white.

창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은?

- 적절한 보호수단은?

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단순한 사실,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님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편집저작물, **기타저작물**

시·소설



음악



게임·컴퓨터프로그램



사진·그림



영화



문제 1. 사진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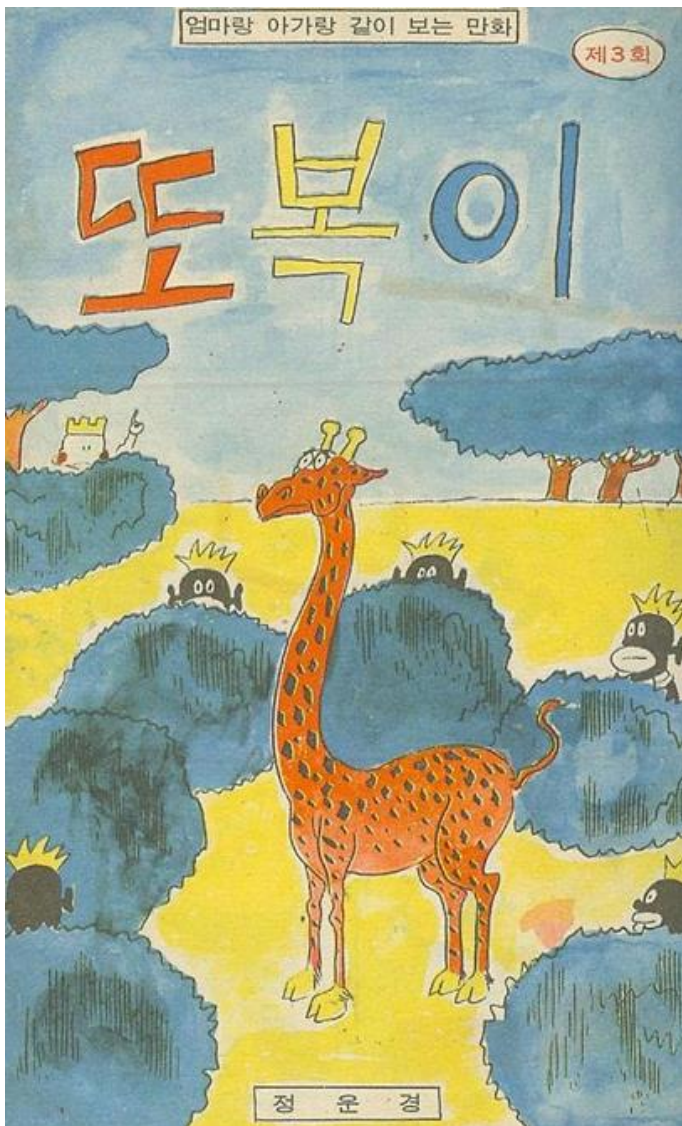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문제 2. 서적의 제호, 영화 제목 등



사실관계

원고는 만화가로서 이 사건 만화 제명인 ‘또복이’를 창안하여 이를 15년간 계속 사용해 왔고, 피고는 식품회사로서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

만화 제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법원 제3부 1977.7.12. 판결 77다90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



문제 3. 캐릭터 이름



보롱보롱 보로로



코코몽



로보카 폴리



Larva(라바)



캐릭터의 보호



캐릭터 이미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캐릭터 이름

상표권



문제 4. 글자체

글자도안 그 자체

-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5 판결 등)
-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디자인에는 해당할 수 있음 ⇒ 등록 필요

글자체 파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함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의의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저작자



법 제9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원칙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2

저작권의 종류 및 보호기간

저작인격권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실명, 이명(별명, 예명)]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제목,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양도나 이전이 불가(일신전속성)
-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금지(사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할 권리

공연권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공중송신할 권리

전시권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판매용 음악 판매용 프로그램,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양도나 이전이 가능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주는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

-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내부자료 한도 내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공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 등의 이용(제24조)
- 공공저작물(국가나 지자체 보유)의 자유이용(제24조의 2)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및 제33조의 2)
-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 2)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

실연자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원,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의 대여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의 대여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지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 시청 입장료를 받는
경우만)





저작권

- 원칙 : 창작한 때 ~ 사망한 후 70년 (법제39조)
- 업무상저작물 : 공표한 때부터 70년 (법제41조)



저작인격권

- 창작한 때 ~ 사망시
- 일신전속권으로서 이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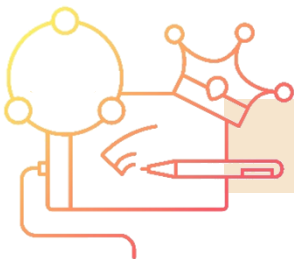


3

법률적 구제방안

 법적 효력

등록된 사항에 대해 추정력과 대항력이 발생함



추정력

- 실명(이명)이 등록된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제53조)
- 침해 시 **과실의 추정**
(입증책임의 경감, 제125조)



대항력

- 저작재산권 등 권리변동 사실(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및 질권 설정 포함)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미등록 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액의 추정

- ① 침해자의 이익액
- ② 실시료 상당액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①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침해행위 이전에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재산권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재산권 침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저작권재산권 침해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는 제외

양벌규정 *

*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